

12. 학위논문연구윤리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가톨릭꽃동네대학교 학칙, 학사내규, 졸업논문 시행세칙, 대학원 학칙 및 학사시행세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학위논문 작성 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7.1. 자구수정)(2018.6.22 자구수정)(2021.6.22 개정)(2022.6.21 자구수정)

제2조(적용대상) 이 내규는 가톨릭꽃동네대학교 학사과정의 졸업예정자로서 졸업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와 대학원 및 사회복지카리타스대학원 석사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2011.7.1. 자구수정)(2018.6.22 자구수정)(2021.6.22 개정)(2022.6.21 자구수정)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이 내규에서 제시하는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자기 자신의 아이디어 또는 연구 결과인 것처럼 표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중복게재"는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대필"은 논문 내용이나 자료분석의 주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의 판단으로 작성케 하거나 논문의 제목, 목차, 정리에 대부분을 타인의 판단으로 작성케 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제1호 내지 제5호 소정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조사자 또는 제보자에게 협박, 폭행, 기타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연구윤리 교육) ①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작성 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학습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논문지도학생에 대한 지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 작성 전에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학위논문 연구윤리 확인서 제출) 학위논문 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학위수여 취소) 연구부정행위로 학위를 받은 자는 교무위원회 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제1호)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논문제출자	과정		학부 (전공)		학번		성명	
지도교수	학과 (전공)				성명			
논문제목	국문							
	영문							

본인은 학위논문의 제목, 목차, 내용 등의 작성과 제출에 있어 논문대필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연구윤리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가톨릭꽃동네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의 학위논문연구윤리에 관한 내규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 ○ ○ (인)

확인자 : 논문지도교수 0 0 0 (인)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총장 귀하